

제12대총여학생회

제30대법대학생회

문과대여성모임'모반'

사회대여성모임'beyond'

법대성연구모임'동쪽'

여성주의문화실험모임'움'

이과대여성위원회

여성전문언론'두입술'

여세이 고처회 2000.이

학생총연락처
반성문화학회
친구들
강연회

글 실는 순서

연은 글 ----- 1

경과보고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건설되기까지 ----- 2

학교측 가안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안 ----- 4

연성부연 수정안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연세성폭력부리뽑기연대회의의 1차 수정안 ----- 9

이제

대학은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학은 자유와 소통 속에서 논쟁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학 내에서는 그 누구도 억압받고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학 내에서는 그 누구도
성별과 지위, 계급, 성 정체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공간이 대학이라면
대학은 그야말로 진보의 공간이며 살만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있는 대학은
그리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대학의 현상은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언제나 자유와 소통 속에서 논쟁이 가능한 공간도 아닙니다.
영연히 대학 내에서도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 차별받는 자는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

대학이 '그나마' 진보의 공간이라고,
'그나마' 살만한 공간이라고 자위하면서
대학 내에서의 억압과 폭력을 못 본 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의 폭력, 우리 안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대학 내의 억압과 폭력을 외면해왔던, 그리고 침묵했던 우리는
억압과 폭력의 방관자였을 뿐만 아니라
억압과 폭력의 재생산자였을 지도 모릅니다.

대학 내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성폭력,
그 지긋지긋한 성폭력의 고리를 끊고,
대학을 성폭력으로부터 해방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행동,
그것이 바로 **반성폭력** 학칙제정입니다.
학생이 중심에서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해나가는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건설되기까지

1. 반성폭력 학칙제정 운동

성폭력의 문제에 대해 반성폭력 학칙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서울대 신정휴 교수(일명 우조교사건) 성희롱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였다. 그 이후로 학내의 반성폭력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96년에는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가 탄생하였다. 여성연대회의에서는 97년말경부터 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제로서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운동을 벌여내었고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반성폭력 학칙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처럼 반성폭력 학칙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은 학생사회로부터 시작되었다.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학교측의 학칙제정 움직임

그동안 학내 여성운동단위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반성폭력 학칙제정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학교측이 반성폭력학칙 제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작년 7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부터였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시행과 함께 교육부는 법령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하여 각 대학으로 내려보냈다. 이 교육부 지침은 학교별로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하였고 세부계획 중 하나로 학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측은 올해초부터 여학생처를 중심으로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학칙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3. 학생참여보장을 위한 노력

학교측에서 학칙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총학생회에서는 학칙의 내용뿐만 아니라 학칙제정의 전과정을 학생·교수·교직원이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여학생처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는 있으나 학칙제정과정에서 실

질적으로 학생들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할 의사는 없음을 밝혀왔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측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의 가안을 만들었고 그 가안에는 성폭력의 예방과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조치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인 성폭력위원회(가)에 학생이 참여할 경우 피해자 보호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는 학생·교수·교직원이 동수로 구성하는 성폭력학칙제정위원회를 건설하여 학칙제정의 전 과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였고 이는 4.17 연세학생총회의 특별요구안으로 제출되었다. 그와 동시에 연세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칙제정과정에 학생이 교수, 교직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를 확인하였다. 또한 한 번의 교양학교 개최와 유인물, 자보 등 선전물을 통해 학칙제정위원회 건설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학생사회 내에서 합의하는 과정들을 계속해 왔었다.

4. 성폭력 대책위원회 건설에 학교측과 합의

교육부령의 과정에서 본관완전점거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교측과 학생 각각3인으로 구성된 교섭단이 꾸려졌고 연세학생총회에서 결의된 5대요구안과 함께 성폭력학칙제정위원회 건설이 특별요구안으로 채택된 가운데 교섭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학내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학생, 교수, 직원이 참여하는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속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성폭력 학칙을 제정한다는 합의를 도출해 냈다.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교수와 학생대표가 각 4인, 교직원대표 1인으로 구성되며 6월초에 첫 회의를 갖기로 예정되었다.

5. 지금 그리고 앞으로

현재 연세성폭력뿌리뽑기 연대회의에서는 학교측에서 제시한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가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학교측안과 수정안의 내용을 검토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번 공청회는 학생들이 적용받는 반성폭력 학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학생들 스스로 검토하고 합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총학생회와 총학생회 및 학생대표들은 공청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6월초부터 진행될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의 학칙제정논의에 임할 것이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안은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 대책과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본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2. 1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수, 교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 성폭력의 정의에 관하여는 많은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성폭력과 성희롱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규정방식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그 행위가 성범죄를 구성하든, 성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나 성범죄에 해당하든 본 규정은 이 모드를 고루하고자 성폭력을 광의로 파악하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 광의의 개념 속에 성희롱도 포함하였다.

즉,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된다. 이에는 교수(시간강사포함),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학칙의 적용을 받는 시간강사는 포함하되 학칙의 적용이 없는 임시직 직원과 용역 직원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장소적인 적용범위는 학칙의 적용을 받는 인 그 의미가 없음으로 인적인 적용범위를 규정한다.

제4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의무)

1. 성폭력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 규정의 목적이 성폭력의 예방과 처리에 있는 만큼 피해자의 보호의 원칙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본 규정안에서는 성폭력 사건 상담자에게 즉각적인 보호조치요청, 관계자의 비밀엄수의무, 각 절차의 원칙적인 비공개전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성폭력 상담소

제5조 (설치)

여학생처 내에 성폭력 상담소(이하 상담소)를 설치한다.

제6조 (구성)

1. 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2. 상담소에는 간사, 상담원, 직원을 둘 수 있다.

▷ 상담소는 성폭력사건발생시, 1차적인 보호조치를 담당하므로 상담원은 심리학적, 의학적, 법학적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할 것이다.

제7조(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성폭력 대책 위원회에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2절 성폭력위원회

제8조(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위원회를 둔다.

▷ 성폭력 위원회는 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정책과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된 성폭력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각종 조서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제9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여성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2. 각 위원은 본교 교수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본 규정에서 학생대표나 교직원 대표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것인지도 논란의 대상이 된다. 학생이 다른 학생의 성폭력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의 원칙과 교육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본 규정은 교수 또는 교수 또는 관계전문가로 규정하였다. 관계전문가에 직원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괄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3. 가해자의 징계 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2조 (회의)

1.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소가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성폭력 사건의 처리

제13조(신고 등)

1. 상담소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고 상담에 응한다.
2.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상담소장은 신고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성폭력 대책 위원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상담소와 위원회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상담소와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집행기관과 의결결정기관으로의 성격을 갖는다. 즉 본 규정은 위원회는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기본 정책 결정과 개별 성폭력사건에 대한 결정 등의 업무(교육, 홍보, 신고접수, 조사, 보고 등)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상담소는 성폭력과 관련된 광범위한 실무를 처리하고 구체적인 성폭력 피해사건은 위원회에서 결정·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제14조 (심의의결)

1. 성폭력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학생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4. 위원회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5. 심의시 가해자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해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위원장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징계시 징계권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징계결정권을 직접 갖거나, 징계요청권을 갖고 구체적인 징계는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담당할 것인가에 관하여 문제가 된다. 본 규정안은 위원회가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에 있어서는 해당징계기관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징계발의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징계기관에 요청을 하거나 징계발의를 할 수 있다. 기타의 해결방법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위원회의 조의, 경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 중재, 가해자에게 교육이수명령, 가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해자의 공개사과 등이 있을 수 있다.

성폭력사건해결방법은 피해자보호를 최우선으로 사안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정상으로는 징계요구권 내지 발의권과 일반적 권한 보호권을 규정하여 기타 해결방법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제15조 (경비)

상당소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칙)

위원회는 성폭력상당소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 등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성부연

수정안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연세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의 1차 수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안은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 대책과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본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2. 1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수, 교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거나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교수(외국인 교수, 시간강사포함), 직원, 학생(교환학생 포함)이 가해자 및 동조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 성폭력 사건서 가해자의 주변 사람이 피해자에 가하는 2차적인 불이익(정신적인 압박, 물리적인 강압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동조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발생 시 진행되는 처리 과정은 모두 피해자 위주로 진행되어야 한다. 비밀 준수에 있어서도 가해자의 보호가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며, 사건 전개 시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을 신고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 그리고 성폭력이 권력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것, 그리고 형사 조사 시 피해자의 진술을 외주로 조사하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 중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제5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의무)

1. 성폭력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성폭력 상담소

제6조 (설치)

여학생처 내에 성폭력 상담소(이하 상담소)를 설치한다.

제7조(구성)

1. 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2. 상담소에는 상담 시 고충 신청자와 상담원, 그리고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상담원은 성폭력 상담소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남녀 각각 최소 1인 이상의 상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 동성의 상담원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더 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 2인 이상의 상담원이 필요하며, 그 상담원은 상시적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성폭력 대책 위원회에 즉시 보고

▷ 이는 상담소에서 성폭력 사건을 운영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특히나 고소에 의한 성폭력인 경우 제대로 공론화가 되지 않고, 은밀하게 책임유시에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상담소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즉시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건 발생 즉시 위원회가 소집되기 힘들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에 한번씩 전체적인 상담내용을 보고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방법을 동의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 2절 성폭력 대책 위원회

제9조(설립목적)

성폭력 대책 위원회는 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정책과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각종 조치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다.

제10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여학생처장 외 기타교수 3인, 학생 4인(총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대학원총학생회장, 원주총학생회장), 교직원 1인으로 구성한다. 교수위원의 구성에 있어 2인 이상의 여교수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여성이 다수이므로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여성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각 위원회의 선임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다른 위원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장, 여학생처장 제외)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에는 전문적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2인이상 두어야 한다. 자문위원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 자문위원의 자격을 뚜렷하게 명시하기 어려우므로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의 추천으로 하는 것이 현실성

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4. 재적위원 중 성폭력 사건의 해당 당사자는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동안 임시적으로 위원 자격을 박탈한다.

▷ 재적위원이 성폭력 사건의 당사자일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위원회는 특정한 안전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괄한다.

2.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맡는다

3.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표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 위원장을 교학부총장이 맡음으로써 학교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위원회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그러한 상황에서 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질 경우 성폭력 처리 과정에 있어서 학생, 교수 등의 원천에 근거하므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 위원회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알 책임을 지닌다.

2.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3. 가해자의 징계 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강구

제13조(회의)

1. 정기회의는 매학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상담소가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 개최는 재적 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이루어진다.

3. 정족수 미달시 위원장은 회의를 3일 이내 재소집하여야 한다. 위원은 회의 불참시 회의 이전에 정당한 사유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 있어서는 출석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밖의 사안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하고 재논의한다.

▷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한 이유는 교수 및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수 대 학생의 격차로 일어 처리될 경우가 있으며 이 때 위원장이 결정할 경우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록 재논의가 비효율적이고, 영사재판에서 결정이 쉽지 않은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때 피고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성폭력 학칙은 가해자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논 점을 상거할 때 오히려 재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회의 결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성폭력 사건의 처리

제14조(신고 등)

1. 상담소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고 상담에 응한다.

2.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3.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상담소장은 신고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이를 성폭력 대책 위원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의결)

1. 성폭력 대책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보고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가해자 및 동조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4. 심의시 가해자 및 동조자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의 기회가 주어져서 피해자는 직접술석하여 발언하거나 피해자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역할을 대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및 신고자는 서면으로 소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5. 심의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위원회는

학생이 중심되는 反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해당 당사자에게 이를 미리 고지해야 한다.

6. 성폭력 대책 위원회는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성폭력 대책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피해자 및 가해자, 동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 및 처벌

1.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2. 성폭력 대책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다.
 - 1) 가해자 공개 사과
 - 2)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 3)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 금지
 - 4)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

▷ 위원회는 징계 기관에 징계를 요구, 발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가해자의 공개사과나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을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가해자의 공개사과는 흔히 '가해자의 인권', '사회광고 위반' 등으로 반론이 제기되나, 가해자의 인권 문제는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태도가 요구되며, 사회광고 위반은 사회는 사람의 양심에 반하는 사죄를 금한다는 뜻으로 가해자와 압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금전적 배상인 경우는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할 때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3.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징계 및 처벌에 불이행할 경우 가중처벌을 내리도록 한다.
4.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하였을 경우 동조자에 대하여 징계 및 처벌을 할 수 있다.

제17조 (경비)

상담소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칙)

위원회는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 대책 위원회의 구성 등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